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고동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169

발의연월일: 2024. 8. 23.

발 의 자:고동진·김종양·김상훈

배준영 • 백종헌 • 박준태

박성훈 · 김위상 · 강승규

박덕흠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24년 8월 22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의 한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7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을 입은 가운데, 해당 호텔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피해가 극대화됐다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음. 2017년부터 6층 이상 모든 신축 건물 내 층마다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지만, 2003년 준공된 해당 호텔은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아니었기 때문임.

이에 화재에 취약하거나 다중이 이용하는 대통령령에 의한 숙박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신속하게설치·관리하도록 함과 동시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하고자 함(향후 스프링클러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화재취약 및 다

중이용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는 정부 측이 사회적인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으로 정함)(안 제12조의2).

법률 제 호

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2(화재취약 및 다중이용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의무) ① 화재에 취약하거나 다중이 이용하는 대통령령에의한 숙박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신속하게 설치·관리하여야 한다.
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종류와 제2항에 따른 기준 및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소방시설 신속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건축이 완료된 제1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

관계인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제1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<u><신 설></u> | 제12조의2(화재취약 및 다중이용 |
| |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 |
| | 방시설의 설치 의무) ① 화재 |
| | 에 취약하거나 다중이 이용하 |
| | 는 대통령령에 의한 숙박시설 |
| |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|
| |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|
| | 라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방 |
| | 시설을 신속하게 설치・관리하 |
| | <u> 여야 한다.</u> |
| |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 |
| |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 |
| | 라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의 |
| |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|
| | 있다. |
| | ③ 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 |
| | 물 및 소방시설의 종류와 제2 |
| | 항에 따른 기준 및 비용 등에 |
| | <u>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</u> |
| | <u>한다.</u> |